



In depth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Release date: Jun 2021

INT 2021-06

암호화자산 및 관련 거래: IFRS에 따른 회계처리 고려 사항

Key points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암호화자산은 최근 가치와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암호화자산 관련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국가에서 감독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양한 유형의 암호화자산의 발행 및 투자와 관련된 활동을 인식, 측정 및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암호화자산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회계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행 IFRS를 살펴보고 원칙 기반 접근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간행물에서는 현재 논의중인 회계적 이슈 중 일부에 집중하여 IFRS 적용 방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예시와 고려 사항은 일반적인 원칙을 보여주지만 암호화자산 거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지침과 관행이 변화함에 따라 이 간행물은 때때로 업데이트되어 더 많은 분야(예: 암호화폐 채굴)로 주제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동향에 대해서는 전문 고문이나 이 간행물의 저자 등 전문가와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론	2
기업이 보유한 암호화자산	5
ICO (Initial Coin Offering) 및 관련 이슈	11
암호화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고려 사항	16
공시	22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3



1. 서론

1.1. 배경

암호화자산은 복사 또는 복제를 할 수 없게 설계된 양도 가능한 디지털 표현(표시)입니다. 암호화자산의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을 '블록체인'(Blockchain) 또는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개인 대 개인 (Peer-to-Peer, P2P)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원장입니다. 암호화자산과 그 기반 기술은 다양한 '현실의' 사물을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화 (접근 및 전송의 용이성 등)의 이점으로 인해 암호화자산은 이해하기 어려운 호기심의 대상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용도로 확산되는 기술로 성장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암호화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암호화자산은 지역의 규제 기관에서 법적으로 유가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자산에는 다양한 하위 집합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암호화자산은 교환의 수단, 블록체인 기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접근 수단 및 이 분야의 활동을 개발하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암호화자산의 하위 집합 중 하나는 주로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며 전통적인 통화와 일부 특징을 공유하는 암호화폐입니다.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itcoin)이지만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간행물에서 다른 유형의 암호화자산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회계기준 제정기구도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는 2015년 IASB의 위원회 안건 제안 과정을 통해 잠재적인 새 프로젝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IASB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국가 및 초-국가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대표들로 구성된 IFRS 재단 자문 포럼인 회계기준 자문 포럼 ('ASAF')은 2016년 12월 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유자의 관점에서 암호화자산의 분류가 종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IASB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지침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IASB는 2018년 7월 회의에서 (기업이 현행 IFRS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안건 결정의 형태로) IFRS 해석위원회('IFRS IC')에게 암호화폐 관련 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IFRS IC는 2019년 6월에 '암호화폐의 보유(Holdings of Cryptocurrencies)'에 대한 안건 결정을 발표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암호화자산을 고려했습니다:

- a. 보안을 위해 암호화를 사용하는 분산 원장에 기록된 디지털 또는 가상 통화이고;
- b. 관할당국이나 다른 당사자가 발행하지 않았으며,
- c.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IFRS IC는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IAS 2 '재고자산'이 적용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IAS 2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업은 보유한 암호화폐에 IAS 38 '무형자산'을 적용합니다.

기술과 시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기업이 회계처리를 결정하는 데 여러 판단 영역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거나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1.2. 자주 사용되는 용어

암호화자산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일부 용어는 이 간행물에서도 사용됩니다.

코인/토큰(Coin/Token)

암호화자산은 '토큰' 또는 '코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산의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용어에 대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의가 없으므로 실무적으로 두 용어는 통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코인'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교환 매체의 역할만을 목적으로 하는 암호화자산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반면, '토큰'이라는 용어는 보유자에게 추가 기능 또는 유tility를 제공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토큰으로 제공되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발행기관의 백서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서(White Paper)

백서는 플랫폼 개발자가 작성한 특정 암호화자산의 개념을 다른 문서로, 예비 투자자에게 아이디어와 전반적인 가치 제안을 제시합니다. 이 백서는 일반적으로 개발 로드맵과 개발팀이 총족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마일스톤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플랫폼(Platform)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유ти리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을 용이하게 하려면 사용자는 특정 코인 또는 토큰을 소유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는 개발자가 블록체인 토큰 또는 코인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ICO가 진행되면 발행자는 현금 또는 다른 암호화자산 (가장 일반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형태로 대가를 받습니다. 개발자는 그 대가로 디지털 토큰 개발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디지털 토큰을 발행 (또는 발행하기로 약속) 할 수 있습니다.

ICO에는 현지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중요한 규제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정화폐(Fiat Currency)

법정화폐는 본질적인 가치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지폐 또는 동전을 나타내며 금이나 은으로 전환될 수는 없지만 정부의 인가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화폐입니다(미달러나 유로 등).

1.3. 회계 목적을 위한 관련 특성

적용할 회계기준을 결정하고 관련 회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암호화자산을 특성에 따라 정의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양한 암호화자산을 분류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단일의 회계원칙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암호화자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의는 없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가 매우 다양한 기능과 맞춤형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찰에 따르면 암호화자산을 유사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사한 유형의 암호화자산이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 목적으로 암호화자산을 분류하는 데 가장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호화자산의 주요 목적; 그리고
- 암호화자산이 고유한 가치를 도출하는 방법

다른 다양한 특성들이 있지만, 그러한 특성들은 일반적인 회계처리를 결정하는 데에 본질적인 특성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특성을 기초로 암호화자산의 4 가지 특정 유형을 정의했습니다:

제목	목적	내재가치
암호화폐 (Cryptocurrency)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토큰 또는 코인입니다. 현재 중앙은행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교환의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없음-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치를 창출합니다.
유동화 토큰 (Asset-Backed Token)	Section 6에서 설명하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유동화 토큰은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토큰으로, 블록체인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물리적 자산(예: 금 또는 석유와 같은 천연 자원)의 소유권을 표시함으로써 가치를 나타내고 파생시킵니다.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합니다.
유ти리티 토큰 (Utility Token)	유ти리티 토큰은 사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토큰으로, 그러한 권리에서 가치를 창출합니다. 유ти리티 토큰은 보유자에게 회사의 플랫폼이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보유자 간에 거래될 수 있지만 주로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발행자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에서 가치를 창출합니다.
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	증권형 토큰은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증권과 유사한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토큰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법인에 대한 경제적 지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권리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재량적이거나 강제적인 권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의 의사결정에서 의결할 수 있는 능력과(또는) 기업의 잔여 지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이익을 분배 받거나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받으므로 기업의 성과로부터 가치를 창출합니다.

또한 일부 암호화자산은 두 개 이상의 식별된 하위 집합의 요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로 평가해야 할 하이브리드 암호화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토큰이 아닌 단순한 특성을 나타내는 암호화자산에 중점을 둡니다.

PwC 견해:

발행자 또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거래의 회계처리를 결정하기 전에 암호화자산의 목적과 용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호화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다양합니다. 백서를 통해 암호화자산의 조건/성격을 이해함으로써 다른 회계모형을 적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기업이 보유한 암호화자산

2.1. 일반적인 견해

IFRS에서는 암호화자산 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다루지 않으며 명확한 산업 관행이 없으므로 암호화자산 회계는 다양한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암호화자산을 보유하려는 기업의 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암호화자산의 하위 집합에 적용될 수 있는 회계기준 및 기타 고려사항을 살펴봅니다.

2.2. 자신의 계정으로 보유한 암호화폐

2.2.1. 적용 가능한 기준

기업이 자신의 계정으로 보유한 암호화폐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회계기준을 고려합니다.

현금 또는 통화

IFRS에는 '현금' 또는 '통화'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회계 목적 상으로 '현금'과 '통화'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통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IAS 32, '금융상품: 표시'에서는 통화와 현금의 관계를 언급하고 IAS 21 '환율변동효과'에서는 현금, 통화 및 화폐성 항목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현금 또는 통화로 간주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는 특히 다음과 같은 현금 및 통화의 일반적인 속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통화가 아니며 대부분 정부나 국가에서 발행하거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 암호화폐는 현재 재화나 용역 가격을 직접 설정할 수 없습니다. 즉 암호화폐는 일부 거래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재화나 용역의 가격 결정에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각 암호화폐에 대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위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 간행물의 작성 시점에서는(2021년 6월)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의 사용을 검토하면서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BDC에 대해서는 Section 6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현금 외의 금융자산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한다고 해서 보유자가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부여받지 않으며, 계약상 관계의 결과로 암호화폐가 존재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암호화폐는 보유자에게 발행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 지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Section 6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도 있지만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기업은 암호화자산의 계약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유형자산

암호화폐는 유형의 항목이 아니므로 IAS 16, '유형자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

IAS 2는 재고자산이 물리적 형태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재고자산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되는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재고자산 회계처리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재판매 할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단기기각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는,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기업은 IAS 2의 일반상품 중개기업에 대한 지침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즉, 시세차익)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면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PwC 견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거하여 재고자산 회계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기업이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판매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한다면 IAS 2의 일반상품 중개기업에 대한 예외지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품'이라는 용어는 IAS 2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암호화폐가 일반상품이라고 결론을 내린 중개기업은 해당 재고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무형자산

암호화폐가 위에 나열된 항목의 정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IAS 38 '무형자산'에 따른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즉, 기업이 자산이 창출할 경제적 효익을 얻고 그 효익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힘을 보유)이며, 그 결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개별적으로 판매, 교환 또는 양도될 수 있으므로 식별가능하다.
- 현금 또는 화폐성 자산이 아니다. 그리고
- 물리적 형태가 없다.

IAS 38은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자산(예: 재고자산) 외의 모든 무형자산에 적용합니다.

2.2.2. 측정 고려 사항

위의 분석을 통해 여러 다른 자산 기준서가 암호화폐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분류와 관련 측정 고려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적용기준	최초 측정	후속 측정	장부금액 변동
재고자산 (IAS 2)	원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	원가를 웃도는 변동
- 일반상품 중개기업 예외지침 적용 외의 경우			- N/A 원가를 밀도는 변동 - 당기손익
재고자산 (IAS 2)	원가	순공정가치	손익
- 일반상품 중개기업 예외지침 적용			
무형자산 (IAS 38)	원가	공정가치에서 상각누계액과 순상차손누계액 차감*	원가를 웃도는 변동
- 재평가모형(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계정책 선택 가능)			- 기타포괄손익 원가를 밀도는 변동 - 당기손익
무형자산 (IAS 38)	원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	원가를 웃도는 변동
- 원가모형			- N/A 원가를 밀도는 변동 - 당기손익

* 대부분의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상각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PwC 견해:

암호화폐의 성격과 특성, 자산을 보유하려는 기업의 사업모형/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한 분류의 범위와 그에 따른 측정의 결정에서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한 회계정책의 시행과 유사한 거래에 대한 일관된 적용에 더하여 적절한 공시는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기업이 다른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사한 자산에 대해 명확하게 구별되는 포트폴리오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기업 내에서도 서로 다른 회계처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3. 자신의 계정으로 보유한 암호화폐 외의 암호화자산

2.3.1. 적용 가능한 기준

암호화폐 외의 암호화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고려할 사항도 유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암호화자산에는 자신의 계정으로 보유하는 증권형 토큰, 유동화 토큰 및 유ти리티 토큰 (총칭 "암호화토큰") 이 포함됩니다.

현금 또는 통화

암호화토큰은 범용적인 교환의 매개로 발행되지 않지만, 재화나 용역 또는 특정한 물리적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를 보유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발행됩니다.

암호화토큰을 현금 또는 통화로 볼 수 있는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토큰은 일반적으로 현금의 속성(위 2.2.1에서 설명)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IFRS에 따라 현금 또는 통화로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금 외의 금융자산

특정 암호화토큰은 보유자에게 현금 또는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플랫폼의 미래성과, 순자산에 대한 잔여지분 또는 기초자산의 가치에 기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 관계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암호화토큰이 보유자에게 현금 또는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6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지만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같지 않으므로 이를 보유한 기업들은 암호화자산의 계약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암호화토큰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해서는 IFRS 9 '금융상품'의 지침을 적용합니다.

유형자산

암호화자산은 유형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IAS 16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

IAS 2는 재고자산이 물리적 형태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재고자산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재고자산 회계처리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재판매 할 목적으로 암호화토큰을 구매하여 단기기각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는, 암호화토큰을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기업은 일반상품 중개기업에 대한 IAS 2의 지침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즉, 시세차익) 목적으로 암호화토큰을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면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고자산 정의를 충족하는 암호화토큰에 대한 측정 지침은 위의 2.2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

암호화토큰은 관련된 권리에 따라 IAS 38에 따른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즉, 기업이 자산이 창출할 경제적 효익을 얻고, 그 효익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힘을 보유)이며, 그 결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개별적으로 판매, 교환 또는 양도될 수 있으므로 식별 가능하다.
- 현금 또는 화폐성 자산이 아니다. 그리고
- 물리적 형태가 없다.

IAS 38은 적용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자산(예: 재고자산) 외의 모든 무형자산에 적용합니다.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암호화토큰에 대한 측정 지침은 위의 2.2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급금

암호화토큰은 보유자에게 미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토큰들은 미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급금입니다. 미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급금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선급금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른 선급자산의 회계처리와 유사할 것입니다.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암호화토큰에 대한 측정 지침은 위의 2.2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일부 암호화토큰은 보유자에게 기초자산에 대한 지분을 제공합니다. 기초자산은 상품(예: 금 또는 석유), 무형자산(예: 라이선스 또는 특허), 예술품 또는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유동화 토큰은 자산 자체에 대한 실제 청구권을 나타내지만 다른 토큰들은 실제 기초자산을 지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암호화토큰이 기초자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을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경우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토큰이 자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기초자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자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암호화토큰은 기초자산에 대한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됩니다.

2.3.2. 암호화토큰의 분류에 적용

위에서 설명한 적용 가능한 기준을 1.3에서 다룬 암호화토큰의 분류에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자산유동화 토큰의 특성을 가진 암호화토큰

유동화 토큰은 보유자에게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토큰은 물리적인 이동없이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자산을 거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자산의 성격과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가 결정될 것입니다.

(2) 유틸리티 토큰의 특성을 가진 암호화토큰

유틸리티 토큰은 일반적으로 보유자에게 미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토큰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급금입니다.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급금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으며 IAS 38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선급자산과 유사하게 회계처리합니다.

(3) 증권형 토큰의 특성을 가진 암호화토큰

증권형 토큰은 플랫폼의 미래이익 또는 순자산에 대한 잔여지분에 기초하여 보유자에게 현금화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는 재량적이거나 강제적인 권리일 수 있으며, 기초 플랫폼과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 또는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증권형 토큰은 IFRS 9에 따른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4) 하이브리드 특성을 가진 암호화토큰

둘 이상의 하위 집합의 요소를 나타내는 암호화토큰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적용 가능한 회계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약 조항의 상호 작용, 토큰의 전반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그 실질과 관련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4. 제 3 자를 대신하여 보유한 암호화자산

2.4.1. 실무상 고려사항

암호화자산은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이 서로 다른 암호화자산을 교환하거나 법정화폐를 암호화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 고객의 암호화자산에 대한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예: 은행 또는 유사한 금융서비스법인). 이 경우 고객은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암호화자산을 기업에 보관합니다.

암호화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약정의 조건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호화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고객이 암호화자산에 접근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한 방법이 포함된 내용(예: 계약서 또는 백서상의 진술)이 제시됩니다. 약정의 다른 특징은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할 수 있습니다(이에 한정되지 않음):

- 자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객의 암호화자산을 '차입'(borrow)하는 능력. 그러한 권리가 고객과의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객 자산의 분리 정도에 따라 암묵적일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암호화자산과 기업이 '소유'(owned)한 암호화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정도.
-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 고객의 청구권. 이는 다양할 수 있고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기업이 자신을 대신하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 자산의 보안. 고객을 대신하여 '핫 월렛'(Hot Wallet) (인터넷에 연결된 전자지갑), '콜드 월렛'(Cold Wallet)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액세스하기 어려운 전자지갑) 또는 '웜 월렛' (Warm Wallet) (오프라인, 그러나 종종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콜드 월렛보다 연결하기 쉬운 전자지갑)에 암호화자산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고객 아니면 기업이 월렛에 대한 개인 키를 보유하고 사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거래소/기업/고객이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잘못 적용된 특정 암호화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유한 암호화자산이 해당 기업의 계정/지갑 또는 제 3 자의 계정/지갑에 보관되는지 여부.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유한 암호화자산에 관한 관련 법률 및 규정, 또는 경우에 따라 그러한 암호화자산에 적용되는 특정 법률 및 규정이 있는지 여부.
-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거나 계약상 집행가능한(예: 백서에 포함) 정도. 많은 경우 외부의 법률의견이 이러한 권리·의무를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자산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이 여전히 개발 중이므로 법률의견이 결론에 대한 확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회계 이슈는 IFRS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암호화자산을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4.2. 회계처리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IFRS에는 회사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보유한 암호화자산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사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일반적인 지침을 고려하여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보유한 암호화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 논제를 다루는 IFRS의 지침과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고려합니다.

개념체계는 '자산'과 '부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에 의해 통제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경제적 자원은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잠재력을 갖는 권리이다.'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게 하는 기업의 현재 의무이다.'
--	---

고객을 대신하여 암호화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을 고려합니다.

- 암호화자산을 '차입'(borrow)하여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 만약 기업이 그러한 권리를 갖는다면 상기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 기업이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암호화자산에 대한 고객의 권리. 특히 고객이 자신을 대신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 무담보 채권자의 지위라면 이는 개념체계의 부채 정의를 충족하므로 재무상태표에 암호화자산과 이에 해당하는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실제로 어떠한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야 하는지(소유한 자산과 고객의 자산이 분리되지 않음) 어떠한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서는 안 되는지(자산이 구분되고 기업이 관리인으로서 보유함)를 결정하기 위해 고객의 자산이

기업의 자산과 분리되는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 기업 및 고객의 권리와 의무가 (해당사항 있다면) 계약이나 백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권리와 의무가 계약상 집행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외부 법률의견이 증거로서 유효한지 여부. 집행가능성은 암호화자산을 다루는 특정 법률 및 규정이 존재하는 한 그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특정 법률 및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다른 법률 및 규정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 기업이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암호화자산의 내역과 고객의 원장에 반영된 각 고객이 개별 보유한 암호화자산의 내역 간 대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이와 유사하게 각각의 거래를 관련된 고객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시장에서 이행된 암호화자산 거래와 개별 고객을 대신하여 수행된 주문 간에 대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대사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지 여부.
- 전용 블록체인 주소의 추적가능성(모든 거래를 전용 블록체인 주소로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만일 암호화자산을 고객의 전용 블록체인 주소로 추적할 수 있다면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암호화자산을 기업이 직접 보관하는지 아니면 제 3자가 보관하는지 여부, 제 3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보관하는 암호화자산의 기록을 관리하는지 여부. 만일 암호화자산을 제 3 자의 계정/지갑에 보관한다면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업이 고객의 암호화자산을 핫 월렛 또는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지 여부. 기업은 고객이 빈번한 거래를 위해 암호화자산의 일정 부분을 핫 월렛에 보관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나머지 부분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지갑의 개인 키를 고객과 기업 중 누가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암호화자산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개인 키를 고객이 보유하여 고객만 사용할 수 있다면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기 사항과 이러한 이슈를 다루는 구체적인 IFRS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암호화자산이 재무상태표상 계상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판단의 문제이고 위에서 기술한 다양한 사실과 상황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될' 답은 없을 것입니다.

3. ICO(Initial Coin Offerings)와 관련된 이슈들

3.1. 실제 시장 상황

ICO는 암호화자산과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에 기반한 자금조달의 형태입니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ICO는 투자자/이용자에게 주식 대신 토큰을 할당합니다. 이러한 ICO 토큰은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을 나타내지 않지만 토큰은 종종 플랫폼(개발되었다면)으로의 접근을 제공하고 암호화 거래에서 교환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ICO에서 발행되는 ICO 토큰의 수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양으로 결정됩니다.

각각의 ICO는 고유한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발행자는 ICO 토큰 발행 시 발행되는 백서나 기초 문서를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서 또는 집행 가능한 법적 요소로부터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관련 조건들을 결정하기 위해 법률의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CO는 증권규제기관에 의해 증권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통일된 견해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발행자는 규제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무보고에 미칠 수 있는 모든 변화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3.2. 토큰 사전 판매 계약 (Pre-Sale Agreement) 관련 회계처리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때때로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를 통해 초기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공모에 앞서 사모를 진행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합니다. SAFT는 ICO 사전단계(pre-ICO)에서의 초기 투자이며, 투자자는 성공적인 ICO 시 변동되는 수량의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대가로 발행자에게 선불 자금을 제공합니다. SAFT 투자자가 수령하는 토큰의 수는 일반적으로 ICO 토큰의 발행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SAFT 발행자는 일반적으로 ICO 사전단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ICO 토큰 가격에서 미리 정해진 할인된 가격으로 SAFT를 정산합니다(예, 발행시 ICO 토큰 가격의 10% 할인). 따라서 성공적인 ICO에서 SAFT 투자자는 원래 투자금의 가치에 해당하는 수의 토큰에 더해 특정된 ICO 토큰 할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SAFT의 조건은 다양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회계처리의 결정 시에는 토큰의 성격/기능 및 미래 보유자가 갖게 될 권리 등(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SAFT의 일반적 형태 중 하나는 유ти리티 토큰에 대한 SAFT로 ICO 시 다른 투자자에 비해 SAFT 투자자가 토큰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SAFT는 ICO가 명시된 날짜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료되고 기업은 투자자에게 원래 투자금(또는 그 일부)을 반환해야 합니다. ICO의 성공은 기업의 통제 하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자금조달 목표('소프트 캡'이라고도 함)가 달성되지 않으면 ICO는 중단됩니다. SAFT 보유자는 명시된 날짜 이전에는 SAFT 투자금 반환에 대한 청구권이 없습니다.

만일 SAFT의 기초자산인 유ти리티 토큰이 보유자에게 미래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부여한다면 토큰은 금융상품으로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행자의 관점에서 유ти리티 토큰을 제공하는 SAFT는 IFRS 9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ти리티 토큰을 제공하는 SAFT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있는 경우"[IFRS 9 문단 2.4]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SAFT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미래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금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ICO가 기업의 통제 하에 있지 않고 발행되는 토큰의 특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ICO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금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SAFT가 금융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SAFT는 최초 인식 시 IAS 32에 따라 발행자의 금융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의 특정 조건에 따라 내재파생상품과 같이 추가 평가가 필요한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PwC 견해:

발행자의 입장에서 전체 경제적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는 관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실과 상황을 신중하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3.3. ICO 발행자의 회계처리

ICO가 수행되면 발행기업은 대가를 수취합니다. 대가의 형태는 다양한데(예, 현금 또는 다른 암호화자산)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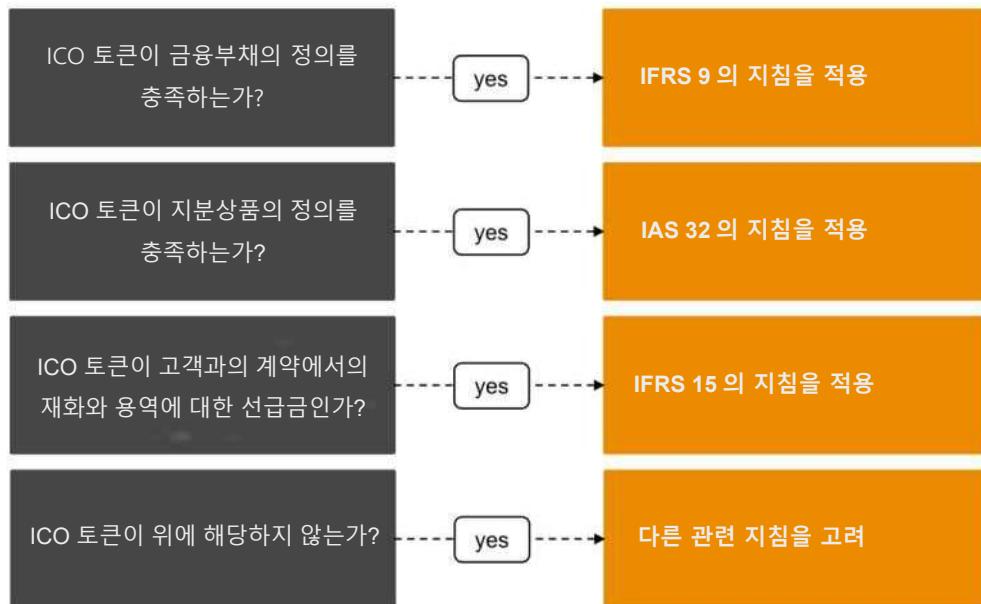
ICO는 IFRS 11, '공동약정'에 따른 분석이 요구되는 공동약정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가자 자금의 대부분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약정에서 ICO 기업과 투자가자 간 관계가 협업관계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투자가들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이므로 약정에서 공동지배력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발행자는 투자가자에게 프로젝트의 미래 방향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방어권 성격으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공동지배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ICO 대가의 형태가 현금이 아닌 암호화자산일 때 해당 거래는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재화의 교환의 경우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암호화자산이 일반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ICO에서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이 교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환거래가 있고 약정에서 공동지배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ICO 기업이 수령한 대가는 분개의 차별에 기록됩니다. 대가의 형태에 따라 위 2.2와 2.3의 내용을 고려하여 분류합니다.

한편, 발행기업의 주요 과제는 발행된 ICO 토큰의 회계처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분개의 차별). ICO 토큰의 회계처리는 발행된 ICO 토큰의 성격과 적용가능한 회계기준의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그림은 발행된 ICO 토큰의 특성 및 회계처리를 결정할 때 고려할 회계모형을 보여줍니다. 발행자의 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약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부채

ICO 토큰의 발행자는 토큰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은 IAS 32의 금융부채 정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상 의무: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 또는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 또는
-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 자기지분상품이 '확정 대 확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ICO 토큰이 금융부채인 경우 회계처리는 IFRS 9의 적용지침을 따릅니다.

많은 ICO 토큰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것이나 특정 마일스톤을 달성하는 시점까지 대금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적어도 상환조건이 소멸되는 시점까지는 계약이 금융부채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IAS 32 문단 11]. 일반적으로 ICO 토큰은 보유자에게 잔여지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자에게 잔여이익, 배당, 청산이나 해산시의 청구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ICO 토큰은 지분상품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특정 프로젝트에만 관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ICO 기업의 잔여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수익거래/미래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

발행기업은 ICO 토큰 발행이 실질적으로 IFRS 15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 고객과의 계약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IFRS 15는 (1) ICO 토큰의 수취인이 고객이고, (2) 회계 목적의 '계약'이 존재하며, (3) ICO 토큰과 관련된 수행의무가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가 아닌 경우 적용될 것입니다.

IFRS 15의 부록 A에서는 고객을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로 정의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이 존재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기업은 백서나 매입약정, 기타 첨부문서가 '집행가능한 권리 또는 의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IFRS 15 부록 A]. IFRS 15 목적의 고객과의 계약에 해당하려면 그러한 권리가 법적으로 집행가능해야 합니다. 발행자가 제공한 문서에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은 IFRS 15 문단 9의 모든 조건을 추가로 평가하여 고객과의 계약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합니다.

PwC 견해:

백서는 법적인 표준약관이나 기타 청약서류(안내서 또는 청약제안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백서 또는 유사한 문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발행자의 법적 의무를 부인하는 조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발행자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ICO에서 수취한 대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을 호스팅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은 종종 ICO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토큰은 보유자에게 플랫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플랫폼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일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큰 보유자는 ICO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CO에 따른 수취액은 발행기업에게 수익일 수 있고 초기에 관련 수익이 이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행의무 및 수행의무의 이행방법과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은 ICO의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타 관련 지침의 고려

위의 고려사항 중 어느 것도 관련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IAS 8의 체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발행자가 투자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정에서 금융상품이나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이 생기지 않더라도 투자자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행자는 IAS 37에 따른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3.4. ICO 기업이 자신이 발행한 ICO 토큰을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는 경우

3.4.1. 일반사항

일부 기업들은 ICO를 통해 생성된(generated) 토큰 중 일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암호화자산의 거래에 이용되는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또는 종업원에게 급여나 상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토큰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3.4.2와 3.4.3에서 보다 상세히 다를 것입니다.

ICO 기업이 ICO 토큰의 특정 수량을 자가 사용을 위해 할당한다면 해당 토큰의 생성 자체에 대한 회계처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ICO 기업은 자가 사용을 위한 ICO 토큰의 생성으로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ICO 토큰의 생성 그 자체로는 교환거래가 아닙니다.

ICO 토큰의 생성은 소매기업이 향후 일정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인쇄하였으나 이를 소비자에게는 배포하지 않은 것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회계 목적 상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대가와 교환하여 바우처를 제 3자에 제공하면 회계 용어로 교환거래가 발생한 상황이 됩니다.

ICO 기업은 교환거래가 발생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토큰의 생성을 회계처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3.4.2. 제 3자가 제공한 용역과 발행한 암호화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제 3자가 기업을 위해 플랫폼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ICO 토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ICO 토큰을 받는 주체가 제 3자인 경우(IAS 19 '종업원급여'에서 정의하는 종업원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여 관찰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ICO 기업과 제 3자 간의 교환거래에 적용할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환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상세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처리에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 ICO 기업이 암호화자산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내용(분개의 차변)
- 기업이 생성하고 인도한 ICO 토큰의 특성

분개의 차변 항목을 결정할 때 기업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과 자본화 가능한 원가가 있는지 아니면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원가는 적용되는 기준서 지침에 근거하여 무형자산의 일부로 자본화 할 수 있거나 (예를 들어 IAS 38에 따른 연구개발원가 지침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분개의 대변 항목은 ICO 토큰 발행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평가에서 ICO 토큰과 관련된 약속을 기초로 적용 가능한 기준서를 결정합니다. 평가의 과정에서 위 3.3에서 설명한 고려사항들도 같이 적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ICO 토큰 보유자에게 미래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분개의 대변은 IFRS 15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ICO 토큰을 제공하는 데 따른 수익은 ICO 기업이 받을 재화와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3.4.3. 종업원이 제공한 근로용역과 발행한 암호화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ICO 기업이 ICO 과정에서 생성한 토큰의 일정 수량을 자사의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경우 IAS 19 '종업원급여' 또는 IFRS 2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약정의 회계처리를 평가할 때에 기업은 생성된 ICO 토큰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ICO 토큰이 지분상품의 정의(ICO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계약)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해당 약정은 IFRS 2에 따른 주식기준보상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것이므로 비화폐성 급여로서 IAS 19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음 사례처럼 IAS 19에 따라 종업원급여의 인식 및 측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례:

ICO 기업은 자신이 생성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틸리티 토큰 중 일정 수량을 자사의 종업원에게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은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과 특성, 종업원이 고객이 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토큰을 부여하기로 한 결정이 IFRS 15 에 따른 고객과의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상은 ICO 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회계연도 직후 다음의 직원에게 '지급'(paid)됩니다.

- ICO 의 성공에 기여합니다.
- ICO 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회계연도 말까지 근무상태를 유지합니다.

인식:

ICO 기업은 동 약정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향후 이전할 재화나 용역을 종업원의 근로용역과 교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IAS 19 에 따른 단기종업원급여(문단 11, 19~23), IFRS 15 에 따른 비현금대가(문단 66~69) 관련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 약정은 종업원에게 가득기간동안 ICO 기업에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므로 ICO 기업은 가득기간동안 단기종업원급여 비용과 관련 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가득기간동안 인식된 부채는 종업원들이 자신의 디지털 계좌를 통해 유틸리티 토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시점에 이연수익으로 재분류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한 경우 기업은 지급받은 때에 계약부채를 인식한다는 IFRS 15 상 계약부채의 표시 지침과도 일관됩니다.

측정:

ICO 기업은 IAS 19 문단 11 에 따라 종업원이 근로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의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할 금액은 ICO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틸리티 토큰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에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추정 원가로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처리:

가득기간동안 종업원이 근로용역을 제공할 때	
차변) 종업원급여	대변) 단기종업원급여부채
ICO 를 통해 유틸리티 토큰이 발행될 때	
차변) 단기종업원급여부채	대변) 이연수익

PwC 견해:

거래의 실질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각 거래의 조건과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ICO 기업이 ICO 토큰과 교환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이를 측정하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암호화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시 고려사항

4.1. IFRS 13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다음 상황에서 암호화자산은 공정가치로 재무제표에 표시, 공시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로 측정하는 일반상품 중개기업이 암호화자산을 재고자산으로 보유	제 3 자에게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암호화자산으로 지급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암호화자산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용역의 대가를 암호화자산으로 지급
ICO 발행자 입장에서의 수익인식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암호화자산
제 3 자를 대신하여 보유하는 암호화자산의 공정가치 공시	투자펀드가 보유한 암호화자산 (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공정가치를 공시)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며, IFRS 하에서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유의한 투입변수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단계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IFRS 13 문단 73).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일반적으로 IFRS 13에 따라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보다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의 사용을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측정일 또는 보고기간 동안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일 현재 수준 1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 목적은 평가일 현재 기업의 입장에서 유출가격(exit price)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암호화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암호화자산의 공정가치 서열체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암호화자산을 이전에는 수준 3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가치를 평가하였으나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IFRS 13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과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평가기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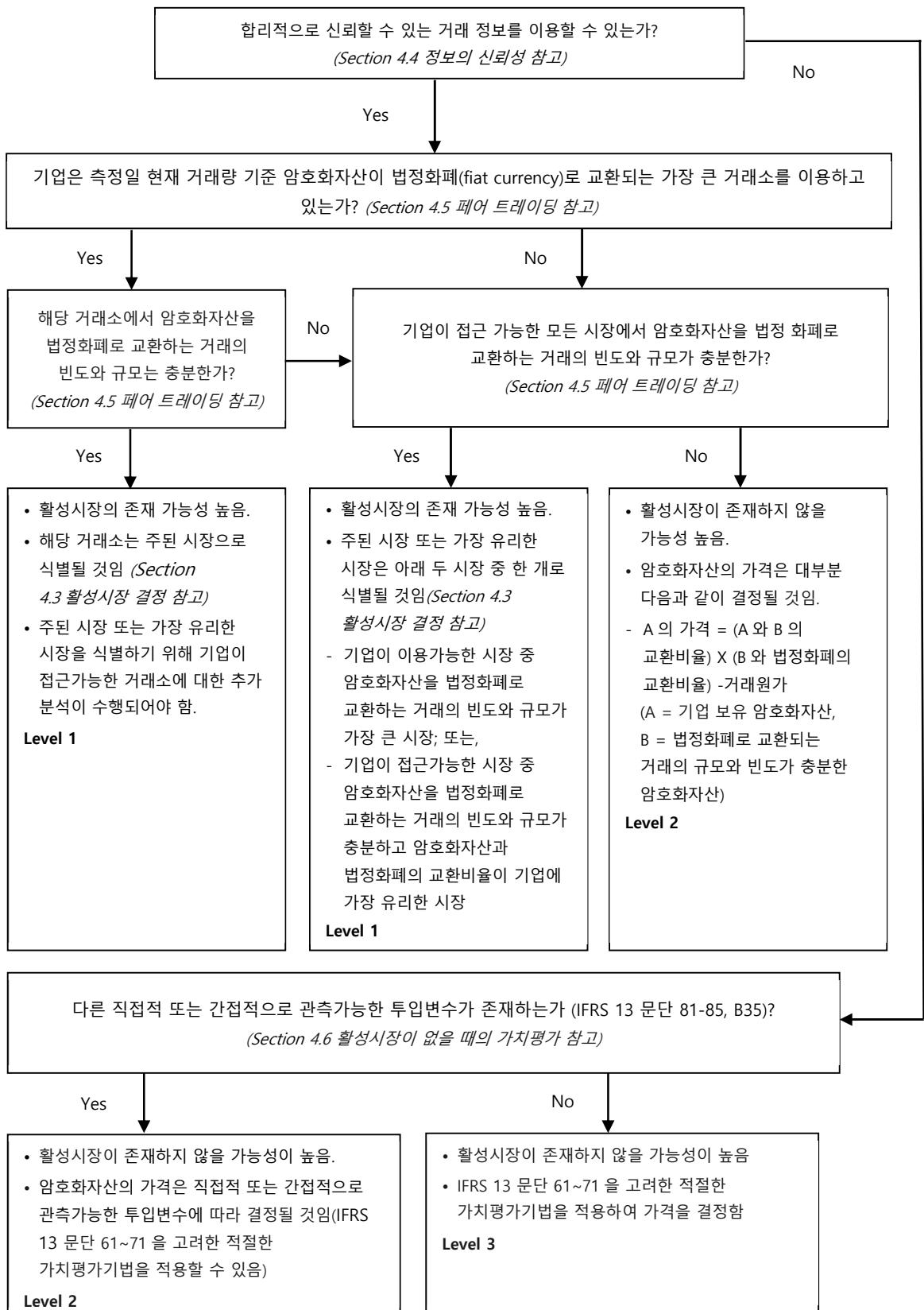
암호화자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암호화자산의 공정가치 산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 공시에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세화의 수준
- 다양한 각 요구사항을 강조하는 정도
-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수준
-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들이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가 공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많은 암호화자산들의 가격 변동성이 높고 중단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시장이 24 시간 개장) 보고기업이 어떤 시점에 암호화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지가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기간말일 오후 11 시 59 분에 측정할 것인지 또는 보고기간말일 기업의 영업 종료 시간에 측정할 것인지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시간대 지역에 위치한 연결기업 내 종속기업의 측정 시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4.2. 암호화자산 평가 접근법



4.3. 활성시장 결정

암호화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측정일에 해당 암호화자산이 거래되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지(즉, 수준 1 투입변수를 사용한 평가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IFRS 13 부록 A에서는 활성시장을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의 활성거래일수(active trading days)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빈도가 활성시장의 정의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수준인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고, 일별 평균 거래총량을 거래되는 암호화자산의 총액(시가총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일별평균거래회전율(average daily turnover ratio)은 거래 규모가 충분한지 평가할 때 고려할 만한 기준입니다.

IFRS 13에서는 거래의 빈도(예: 활성거래일수)와 규모(예: 회전율)가 어떤 수준 이상이어야 활성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영역에서는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주식 시장에서 많은 주식들의 일별평균거래회전율은 1% 미만입니다. 그러나 보고기간 동안의 활성거래일수가 충분하다면 이러한 주식들도 활성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CoinMarketCap¹(CMC)에 따르면 2021년 5월 한 달 동안 시가총액 기준 상위 5개 암호화자산의 거래일 동안의 일별평균거래회전율은 4~302%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양적 요소로만 판단할 때 해당 암호화자산이 거래되는 활성시장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정보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질적 요소들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반적으로 정보의 신뢰성(아래 Section 4.4 참고); 그리고,
2. 페어 트레이딩(아래 Section 4.5 참고)

특정 암호화자산들은 활성시장의 정의를 충족하는 다수의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으며 측정일에 각 거래소에서의 공정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IFRS 13에 따라 기업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의 주된 시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 주된 시장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자산의 거래규모가 가장 크고 거래 빈도가 가장 빈번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CMC가 여러 암호화자산 거래소의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거래소는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거래만을 취급하므로 일부 거래소는 특정 기업에게 주된 시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IFRS 13에서는 시장의 거래 규모와 빈도가 거의 유사하여 활성시장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이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장을 가장 유리한 시장으로 규정합니다.

IFRS 13 문단 17은,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을 식별하기 위하여 생길 수 있는 모든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할 필요는 없으나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이 경우에 반증이 없으면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시장을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으로 본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된 시장을 식별하였다면 IFRS 13 문단 15, B37~B44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orderly transactions)로부터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장외에서 유동성 공급자 등으로부터 암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원가는 유입가격(entry price)으로서 IFRS 13 문단 9와 B2에서 요구하는 유출가격(exit price)을 기초로 한 보유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므로 암호화자산의 측정을 위한 적절한 가치평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¹ <https://coinmarketcap.com/>

4.4 정보의 신뢰성

어느 시장참여자가 SEC에 제출한 주요시장정보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자산 시장과 전통적 시장의 거래자료를 비교하고 기타 가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거래소들의 거래자료가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간행물에서 해당 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논하지는 않지만 해당 보고서에서는 거래 규모와 빈도의 평가에 사용될 거래정보를 확보할 때 데이터의 원천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소의 자료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소의 자료보다 일반적으로 더 신뢰성이 있지만 관련 규제기준과 거래자료 전반에 걸친 감독이 있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4.5 페어 트레이딩(Trading pairs)

수준 1 투입변수에 대해 IFRS 13 부록 A에서는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암호화자산은 종종 전통적인 화폐가 아닌 다른 암호화자산으로 교환됩니다. 이와 같은 암호화자산에서 암호화자산으로의 교환은 일반적으로 정보제공자의 웹사이트에 공시되는 거래량과 거래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된 거래가격은 각 거래소나 정보제공자의 재량에 따른 요율로, 암호화자산을 법정화폐로 교환하였을 때의 절대적 교환비율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우리의 견해로는, 신뢰성 있는 출처에서 공시한 암호화폐에서 법정화폐로의 교환이 있는 경우에만 특정 암호화자산의 활성시장이 존재합니다. 암호화자산에서 암호화자산으로의 교환은 활성시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없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암호화자산을 다른 암호화자산으로 교환한 다음 다른 거래소에서 법정화폐로 교환하여야 합니다. 이런 시장은 암호화자산 거래가 빈번하고 거래 규모가 있다 하더라도 IFRS 13에 따른 활성시장이 아닙니다.

IFRS 1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암호화자산을 매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시장을 주된 시장으로 보지만 해당 시장에서 암호화자산이 법정화폐로 교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장은 IFRS 13에 따른 활성시장이 아니므로 주된 시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는지 판단할 때 기업이 접근 가능한 거래소에서의 모든 법정화폐로의 매매(exit trades)를 고려합니다. 그 다음 활성거래일과 평균화전율을 고려하여 IFRS 13에 따른 충분한 규모와 빈도인지를 결정하고 해당 거래소가 주된 시장인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례:

암호화자산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산 A와 B는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교환비율에 기초하여 빈번하게 서로 교환됩니다. 자산 A와 B는 IAS 21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외화로 보지 않습니다.

자산 A는 활성시장에서 쉽게 현금으로 교환될 수 있는 반면, 자산 B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활성시장은 없습니다. 자산 B의 가치를 평가할 때 활성시장에서 자산 B가 자산 A로 교환된다는 것을 수준 1에 부합하는 관측 가능한 거래로 볼 수 있을까요?

자산 B에 대해서는 활성시장이 없으므로 기업의 기능통화(법정화폐)로 표시된 수준 1의 공정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 B를 현금으로 직접 교환할 수 있는 활성시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산 B를 현금으로 교환하려면 자산 A를 거쳐야 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이나 수준 1 투입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차액이 발생하고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측정을 위해서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이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필요한데, 이 사례에서 측정치 전체는 수준 1의 공정가치 측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활성시장의 정의에 법정화폐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수준 1의 공정가치 측정치에 부합하려면 관련 거래를 법정화폐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법정화폐는 IAS 21에 따라 보고기업의 기능통화로 환산된 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보고 목적으로 IAS 21에 따른 외화나 기능통화 단위로 설정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활성시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는 암호화자산은 IFRS 13 문단 76~78에서 기재된 수준 1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법정화폐로의 교환에 항상 추가 수수료나 차액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적 수수료나 차액이 관측가능한 경우라면(예를 들어 암호화자산이 활성시장에서 법정화폐로 거래되는 다른 암호화자산을 통해 법정화폐로 교환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자산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 2의 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법정화폐로 쉽게 교환할 수 없는 암호화자산은 수준 3이 적절할 것입니다.

활성시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두 가지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시장 간 유의적인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된 시장(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과 실제 수취금액 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공정가치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거래가격과 공정가치 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의 존재 그 자체로는 활성시장이 없다는 지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일부 암호화자산은 법정화폐와의 연계를 목표로 합니다. 예컨대 하나의 암호화토oken이 1 USD 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호화자산은 IAS 21의 정의에 따른 외화나 기능통화가 아니므로 활성시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다른 암호화자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4.6. 활성시장이 없을 때의 가치평가

4.6.1.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많은 암호화자산들은 IFRS 13에 따른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상황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치평가 접근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은 시장참여자가 측정되는 암호화자산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시장참여자들은 암호화자산에 대해 시장접근법(IFRS 13. 문단 B8)을 사용하므로 시장접근법이 가장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이나 사실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이 다른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가접근법(IFRS 13 문단 B8)이나 수익접근법(IFRS 13 문단 B10)은 실무에서 매우 드물게 사용될 것입니다.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을 결정할 때 IFRS 13에 따라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합니다.

암호화자산의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에는 양 당사자간 장외거래, 중개인의 공시가격, 여전히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많은 시장이 있다는 점에서 기타의 정보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중개인의 공시가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를 신중하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중개인의 공시가격은 관측가능한 시장거래를 기초로 한 가격이 아니라 특정 모형을 사용하여 산출된 가격일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2021년 6월 기준) 중개인의 공시가격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치평가모형은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암호화자산 시장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 또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FRS 13에서는 가치평가기법을 변경(또는 여러 개의 가치평가기법의 가중치를 변경)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똑같이 또는 더 잘 나타내는 측정치를 산출해낸다면 그러한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치평가기법을 변경할 때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새로운 시장의 발달
- 새로운 정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해짐
- 이전의 정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

- 가치평가기법의 개선
- 시장상황의 변동

4.6.2. 가치평가기법의 보정

IFRS 13 에서는 제 3 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를 판단할 때 특정한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자산의 취득거래가 관측가능한 거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례:

기업은 6 월 1 일 개시시점에 활성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닌 제 3 자 거래를 통해서 암호화자산을 취득하였고 취득금액은 CU100 으로 거래가격에는 다른 요소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6 월 1 일 종료시점에 기업은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CU104 로 평가하였습니다. CU4 만큼의 공정가치 증가가 있었는지 고려하기 전에 기업은 먼저 가치평가기법/모형의 적정성을 재평가할 것입니다. 그 다음 IFRS 13 문단 64 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가치평가기법/모형이 6 월 1 일 개시시점에 지급한 CU 100 에 맞춰 보정되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취득시점에 평가모형을 사용하여 거래가격인 CU100 과 다르지 않게 평가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래가격으로 CU100 을 지급하였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사용한 가치평가모형에 따른 공정가치는 취득시점에 CU102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6 월 1 일 개시시점에서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가 CU2(= CU102-CU100) 인 점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측정시점(이 사례에서는 6 월 1 일 종료시점)에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결과는 해당 차이가 조정된 CU102(= CU104-CU2) 가 될 것입니다.

최초거래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초거래가격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자산의 측정에 있어 기업은 IFRS 13 에서 요구하는 보정에 대한 지침에 비추어 가치평가모형이 합리적인 결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평가전문가로부터 받은 평가보고서가 모두 이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외부 평가보고서에 의존할 때 기업은 평가자가 사용하는 방법론이 보정 지침을 포함하여 IFRS 13 에서 요구하는 다른 모든 측면들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지급한 거래가격은 측정일에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암호화자산의 다른 단위에 대한 가치평가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공시

암호화자산 및 관련 거래의 회계처리에는 유의적인 판단과 기초가 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산 회계처리를 다루는 특정한 회계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회계기준이 없으므로 암호화자산 및 관련 거래에 대해 요구되는 특정된 공시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호화자산 및 관련 거래에 대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공시사항이 판단의 영역이라는 사실 외에도 암호화자산 및 관련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이에 대한 사실과 상황이 모든 이해당사자(특히 주주, 애널리스트, 감독기관)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지역별로 정보이용자의 기대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재무제표에 명확하고 충분한 공시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암호화자산의 발행자/보유자에 의해 결정된 회계 분류에 따라 적용가능한 일반적인 공시사항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약표는 공시와 관련된 통상적인 항목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 목록이 공시와 관련된 전체 항목을 다룬 것은 아니며 특정 기업이나 관련된 사실 및 상황에 따라 공시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사례
암호화자산 및 관련 거래 내역, 거래의 목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보유한 암호화자산에 대한 설명(암호화자산의 성격 포함)암호화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사업모형ICO 세부사항(현금 및 비현금 거래)특히 ICO 백서에 포함된 약정과 관련한 프로젝트의 성공여부
회계정책 및 그러한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사항 (IAS 1 문단 117(2), 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보유한 암호화자산에 적용한 회계기준측정기준제 3 자를 위해 보유한 암호화자산의 재무상태표 포함 여부(근거 포함)ICO로 유입된 대가의 인식(특히 ICO 발행에 따른 대변에 인식한 항목의 성격)회계기준 및 해석서의 변경을 포함하여 예측가능한 향후 규제의 변동
추정불확실성의 원천 (IAS 1 문단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수준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정가치이연수익의 수익인식 형태
보고기간후 사건(IAS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보유한 암호화자산 가치의 중요한 변동ICO 또는 기타 유의적인 마일스톤의 달성/실패(예: 주요 수행의무의 달성여부)
암호화자산의 공정가치(IFRS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보유한 암호화자산의 공정가치공정가치서열체계에 따라 분류된 공정가치 수준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 특히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의 판단에 대한 고려사항과 사용된 근거 및 자료의 신뢰성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민감도에 대한 논의
위험 및 위험관리방법 (IFRS 7 이 반드시 적용될 필요는 있지만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암호화자산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범위위험관리 프로세스, 전략 및 조치

암호화자산과 관련된 영역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영역이기에 기업은 관련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기업이 해당되는 공시를 시장의 기대와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6.1.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무엇인가?

6.1.1.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금 또는 그 밖의 상품과 같이 자산의 가치가 대체로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암호화자산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목표로 하는 자산의 가치로 고정하고자 해당 자산을 담보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을 1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나타내도록 지정하는 경우 발행기관은 유통 중인 각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 달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확신을 제공하려 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탈중앙화금융 즉 'DeFi'(Decentralized Finance) 환경이 아니라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이 그 가치를 고정하려는 자산 외에 암호화자산 등의 다른 자산을 담보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드물게 관찰됨). 또는 가치 변동성을 제거하고자 코인의 공급과 수요를 통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코인의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개발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가치 변동이 큰 암호화자산을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여 해당 암호화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쉽게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보유자가 이러한 가치 변동이 큰 암호화자산을 매각하여 스테이블코인의 기초자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유의적으로 더 큰 거래원가가 발생할 수 있고 거래가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은 유의적으로 더 길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거래소가 특정 암호화자산을 법정화폐와 같은 비암호화자산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복수의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그러한 거래에 대해 더 많은 거래원가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6.1.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하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주권통화의 디지털 표현으로서 중앙은행이 발행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발행한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냅니다. CBDC의 이러한 속성들은 사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과의 주요 차별화 요소입니다.

아직 개발단계 초기이지만 국제결제은행(BIS)의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4 가지 유형의 CBDC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 Direct CBDC –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시스템에서 소매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irect CBDC는 중앙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입니다.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의 원장을 유지하고 소매금융의 지급을 실행합니다.
2. Hybrid or two-tiered CBDC – 두 개의 수단으로 운영되는 중간 솔루션입니다. 중개자가 소매금융의 지급을 처리하지만 CBDC는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이며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에 대해 중앙으로 집중된 원장을 유지하고 중개자가 실패하는 경우 지급시스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백업 기술 인프라를 운영합니다.
3. Intermediated CBDC – Hybrid CBDC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중앙은행은 모든 소매금융거래에 대한 중앙으로 집중된 원장이 아니라 도매금융 원장만을 유지합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이며 민간 중개자가 지급을 실행합니다.
4. Indirect or synthetic CBDC – 지급결제기능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제한된 은행(narrow payment bank)과 유사하게 중개자가 지급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중개자에 대해 청구권을 가지며 중개자는 모든 소매금융 지급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중개자들은 소매금융고객에 대한 모든 부채에 대해 중앙은행에 청구권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6.2.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어떤 유형의 암호화자산인가?

6.2.1. 스테이블코인

어떤 회계기준을 적용할지 결정하고 관련된 회계 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암호화자산을 그 특성에 근거하여 정의된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서로 다른 암호화자산을 분류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체계는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암호화자산의 정의도 없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의 특색이나 맞춤화 된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암호화자산을 유사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회계 목적으로 암호화자산을 분류하는 데 가장 관련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호화자산의 주된 목적
- 암호화자산이 고유가치를 도출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1.3 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암호화자산의 정형적인 하위 집합(즉 암호화폐, 유동화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로 볼 때 스테이블코인은 유동화 토큰에 해당합니다. 유동화 토큰의 목적은 기초자산을 근거로 그 가치를 나타내고 도출하는 블록체인기술에 근거한 디지털 토큰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 토큰의 고유가치는 이러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모든 유동화 토큰이 스테이블코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간주되는 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가치 변동이 큰 다른 암호화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토큰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간행물의 목적상 우리는 초인플레이션 경제환경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것이 아닌 법정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현금성자산과 같이 가치 변동이 적은 다른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만을 고려할 것입니다.

6.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가 발행한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부채가 되는 경우 앞서 정의한 하위 집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별도의 하위 분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는 교환으로 전통적인 법정화폐를 얻을 권리만을 그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CBDC 를 설계하였다면 유동화 토큰의 하위 집합에 속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CBDC 보유자의 관점에서 회계처리를 결정하는 접근방법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6.3. IFRS 에 따른 현행 회계처리

2019년 6월 IFRS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의 보유(Holdings of Cryptocurrencies)'에 대한 안건 결정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암호화자산의 하위 집합을 고려하였습니다.

- 보안을 위해 암호화를 사용하는 분산된 원장에 기록된 디지털통화 또는 가상통화로서
- 관할당국이나 다른 당사자가 발행하지 않았고
-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IFRS 해석위원회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러한 자산에 IAS 2 '재고자산'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만약 IAS 2 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그러한 암호화자산의 보유에 IAS 38 '무형자산'을 적용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위에 나열된 첫 번째 및 두 번째 기준을 충족하지만 세 번째 기준을 충족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일반적으로 코인 발행자나 발행자의 관계사) 간에 계약상 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인에는 IFRS 해석위원회의 안건 결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서로 다른 스테이블코인은 서로 다른 조건을 따르므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CBDC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경우에 따라 중앙은행이 관련 의무를 부담하므로 명확하게 두 번째 조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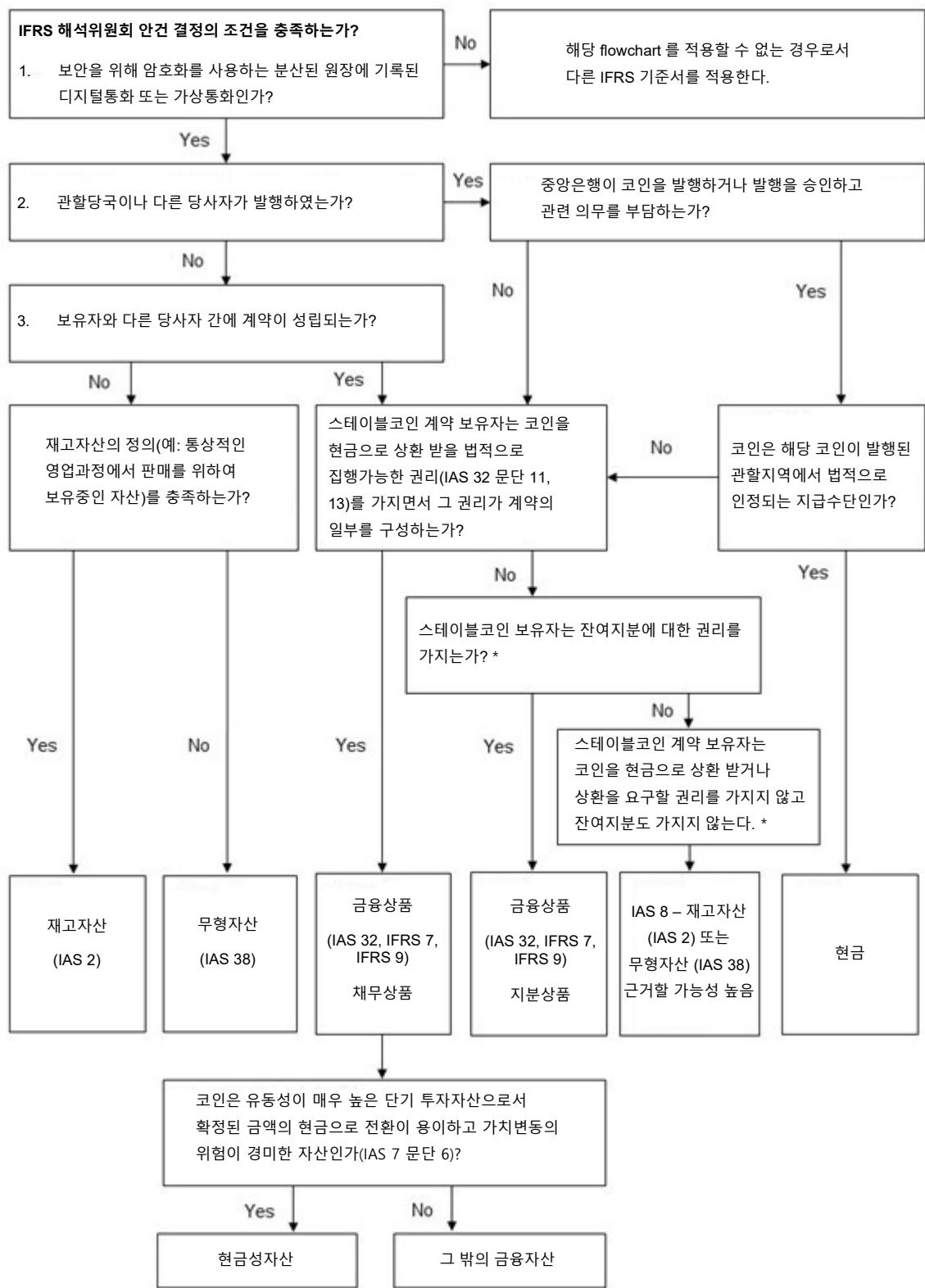
총족하지 않으며 따라서 IFRS 해석위원회의 안건 결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6.4. Decision tree

아래의 decision tree는 기업이 기업 자신의 계정으로 보유하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에 대한 현행 IFRS에서의 회계처리를 검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3 자를 대신하여 스테이블코인과 CBDC를 보유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2.4에서 설명된 회계처리 고려사항을 참고합니다.

기업이 스테이블코인과 CBDC에 적용할 회계처리를 결정할 때에 많은 부분에서 판단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추가 검토가 요구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되거나 결정적인 답이 현재 없습니다.

아래의 요약은 이 간행물의 발행일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한 것이며 더 진전된 논의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서로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CBDC에 관련된 권리를 평가할 때에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상환권이 토큰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러한 논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토큰 보유자는 기초자산으로 하는 토큰 자체와 분리된 뜻 권리를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큰과 상환권이 각각 이전되거나 결제될 수 있다면 이러한 토큰과 상환권은 별도의 회계단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5. 일반적인 고려사항

6.5.1.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코인을 현금으로 상환 받을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는가 (IAS 32 문단 11, 13)?

스테이블코인의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코인 보유자는 해당 코인이 금융상품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IAS 32 에서 “거래당사자 어느 한 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현재 경험으로 볼 때 스테이블코인은 계약을 통해 발행됩니다. 따라서 코인 보유자는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할지의 맥락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지분상품인 계약이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계약상의 권리는 금융자산일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측정 범주를 결정하기 위해 기업은 우선 해당 금융자산이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발행자의 관점에서 판단)인지 채무상품인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계약입니다. 채무상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에게 현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현금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나타낼 것입니다. 계약상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예: 보유자가 범죄활동수익으로 사용하거나 발행자의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상환될 수 없는 경우).

지분상품이 아닌 금융자산은 IFRS 9 의 채무상품에 대한 지침을 적용하여 분류하고 측정합니다. 즉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과 그 특징이 원리금의 지급만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산업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서로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CBDC 에 관련된 권리를 평가할 때에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기를 권고합니다. 상환권이 토큰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논의에 포함될 것입니다.

6.5.2.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잔여지분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는가?

상환 받을 권리가 없는 경우(즉 발행자가 그 자신의 재량으로 상환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즉 풋가능 상품이 아니거나 존속기간이 정해진 기업이 발행한 상품이 아니라면)에는 해당 상품은 여전히 금융상품일 수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기업의 잔여지분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업의 청산에 따라 해당 코인의 보유자에 적용될 법률 조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코인 보유자는 발행자가 청산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발행자의 순자산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형식 외에도 보유자의 계약상 권리의 실질 또한 중요합니다.

지분상품을 나타내는 금융상품은 IFRS 9 의 지침에 따라 분류하고 측정할 것입니다. IFRS 9 에 따라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으로 지정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IFRS 9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은 단기매매형목이 아닌 경우에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6.5.3.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코인을 현금으로 상환 받거나 상환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지 않고 어떠한 잔여지분도 가지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서 IAS 8 의 지침을 적용하여 IAS 2 ‘재고자산’이나 IAS 38 ‘무형자산’과 같은 다른 적용 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할 것입니다.

6.5.4.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정의

IFRS에는 '현금'이나 '통화'라는 용어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회계 목적 상 '현금'과 '통화'는 서로 통용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IAS 32 '금융상품: 표시'는 통화와 현금 간의 연결관계를 보여주며 IAS 21 '환율변동효과'는 현금, 통화, 화폐성항목 간의 연결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현금이나 통화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IAS 7 '현금흐름표' 문단 6에서 현금을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으로 정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 보유 현금은 통상 물리적으로 보유한 통화로 이해됩니다.
- 요구불예금은 IFRS에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구불예금은 요구에 따라 상환될 수 있고 24시간이나 1영업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사용 가능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언제든지 추가 자금을 예치할 수 있고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계좌(예: 은행 당좌예금)는 요구불예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보다 넓게 보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급수단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가치를 도출하는 외에 법정화폐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 교환의 매개
- 평가의 단위
- 가치의 저장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급수단으로 간주되는 외에 위와 같은 특징을 모두 나타낼 때에만 CBDC를 잠재적으로 현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IAS 7 문단 6에서는 현금성자산을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하지 않거나 정의의 다른 부분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스테이블코인과 CBDC를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을 것입니다.

6.6. 예비적 결론

일반적으로 암호화자산은 제품 혁신과 디자인 및 기능의 정교함 모두에서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변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상품에 대한 예상되는 회계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은 이러한 상품을 평가할 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품에 첨부된 계약상 권리의 성격과 실질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을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를 평가하는 데에 이러한 상품에 첨부된 상환권이 결정적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 그 성격과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PwC는 IASB의 제·개정 프로젝트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In brief'와 상세한 실무적용이슈를 다루는 'In depth'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최근 제·개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는 이를 번역한 것으로서 각 사례는 결정 시점 당시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서를 기초로 작성되어 그 이후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자료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구체적 인회계처리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2021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